

총회 교회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지침(안)

본 지침(안)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4회기 총회에서
총회 임원회 청원으로 결의하여 채택되었습니다.(2019. 9.23.)



총회 교회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지침(안)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이 지침(안)은 교회와 노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성폭력 사건이 신고 및 접수되었을 경우, 교회와 노회가 사건 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안)입니다.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2018. 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교회(당회)

1.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교회는 교회성폭력 사건 발생 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을 홀수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성폭력 전문가는 외부인도 가능하다. 위원회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초기대응(교회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접수 시)

- 1) 교회(당회)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긴급 격리하여 조치하고,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 2) 교회(당회)는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3) 교회(당회)는 피해자를 지원한다.(심리적 안정 지원, 의료 및 상담지원)
- 4) 목회자(목사, 전도사) 또는 장로가 가해자인 경우, 사건 심의 결정 시까지 가해자는 목회 및 선교, 교회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5) 교회(당회)는 사건 심의 결정 시까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 후 사직서를 처리한다.

(※ 현행 공무원법 준용: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참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시행 2019. 4. 30. 대통령훈령 제 401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진상조사 및 심의

- 1) 피해자의 피해 사항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 2) 목격자 및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한다.
- 3)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한다.
- 4) 사건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당회가 없는 경우, 제직회, 공동의회 등 교회를 대표하는 공적 모임에 보고한다.)
- 5) 모든 조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6) 특별위원회는 진상 조사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 7) 모든 절차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목격자 및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원칙을 공지하고, 조사위원은 사건의 관계자 신원 및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교회(당회)의 징계

(현행 총회 헌법으로는 치리가 어려우므로 교회(당회)차원에서 징계를 한다.

당회가 없는 경우, 제직회, 공동의회 등 교회를 대표하는 공적 모임에서 징계의 정도를 논의하고 징계한다.)

1)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심의 결과를 보고받는다.

2)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

가. 가해자가 목사일 경우,

: 심의 결과를 당회 및 공동의회에 공개하고, 절차에 따라 노회에 심의결과를 제출하고, 징계를 요청한다.

나. 가해자가 전도사일 경우,

: 심의 결과를 당회 및 공동의회에 공개하고, 교회(당회) 차원에서 징계 정도를 논의 하고 징계 하며, 노회가 지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회가 절차에 따라 지도 하도록 노회에 보고한다.

다. 가해자가 장로일 경우,

: 심의 결과를 당회 및 공동의회에 공개하고, 교회(당회) 차원에서 징계 정도를 논의 하고 징계 한다.

3) 심의 및 징계 결과를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통보한다.

5. 종결 및 조치 이행

1) 가해자를 조치한다.

2) 교회(당회), 공동의회, 노회에 보고한다.

3) 피해자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II. 노회

1.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노회는 교회성폭력 사건 발생 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을 홀수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성폭력 전문가는 외부인도 가능하다. 위원회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할 시 노회 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2. 초기대응

(지교회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로 목사의 신분 처리 및 교회 성폭력 사건 접수 시)

- 1)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가해 목사가 ‘자의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조사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후 사직서를 처리해야 한다.

(※ 현행 공무원법 준용: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참고, p. 2 참조)

3.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진상조사 및 심의

- 1) 해당 당회의 진상조사 및 심의결과를 검토한다.
- 2) 목격자 및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한다.
- 3) 피해자와 가해자를 소환하여 분리 조사를 한다.
(피해자의 경우 중복 진술하지 않도록 1차 진술서를 채택할 수 있다.)
- 4) 사건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4. 노회의 처리

- 1) 노회 임원회는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확인한다.
- 2) 심의 결과 확인 후, 죄과가 확인되면 노회장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기소위원회에 기소 의뢰할 수 있다.
- 3) 성폭력 가해 목회자가 ‘교단탈퇴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노회임원회는 처리 없이 수리할 수 없다.

- 4) 성폭력에 관한 죄과와 기한은 사회법에 준하여 적용한다.
- 5) 기소위원회를 거쳐 노회 재판을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가. 가해자가 목사나 장로일 경우,
 - :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정기노회 시 보고한다.
 - 나. 가해자가 전도사일 경우,
 - :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노회가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5. 종결 및 조치 이행

- 1) 가해 목회자(목사, 전도사) 및 장로를 처리하고 정기 노회에 보고한다.
 - 2) 성폭력 이력 목회자의 이명, 청빙 과정에서 해당 교회가 목회자의 성폭력 관련 사실을 노회에 요청할 시, 반드시 정보를 제공한다.
 - 3)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노회원의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 ※ 현재 노회의 처리 기준이 없으므로 총회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는 내부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
- 1)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2.3.21, 2015.5.18>
 -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 3)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참고. 교육공무원법 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교육공무원법 제52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1)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2.3.21, 2015.5.18>
-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 3)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참고. 교육공무원 징계기준(2019년 3월 18일 시행)

[별표]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2019.03.18. 시행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감봉-견책	강등-정직	파면-해임	파면	파면
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강등-정직	해임-강등	파면-해임	파면	파면
다. 성매매	정직-감봉	강등-정직	해임	파면	파면
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해임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마. 성폭력	해임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
사. 공연음란, 불법촬영	감봉-견책	강등-정직	파면-해임	파면	파면
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불법촬영	강등-정직	해임-강등	파면-해임	파면	파면
자.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 신상유출, 권리구제 방해, 폭언 및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	감봉-견책	해임-강등-정직	해임	파면	파면
차. 그 밖의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우	감봉-견책	해임-강등-정직	해임	파면	파면
카. 학생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폭력	감봉-견책	강등-정직	해임-강등	파면-해임	파면-해임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7호에서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유포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4)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5)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6)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